

- 홍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변경) -
금강유역환경청 승인조건 및 조치결과서

2016. 2.

금강유역환경청

승 인 조 건	조 치 계 획	비 고
<p>1. 「하수도법」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은 발생하수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히 산정하여 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남당’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계획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업이므로 개발계획의 변동(축소)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용량을 재검토한 후 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함. - ‘홍성’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(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, 좋은도시아파트, 더스타일아파트 등)에 대해 빠짐없이 표로 제시하여야 함. 	<p>☞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은 발생하수량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당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발생오수는 대부분이 남당관광지 개발사업에 의한 발생량으로 향후 남당관광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시 발생 관광오수량을 재검토하여 적정 시설용량으로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겠음. • 홍성공공하수처리시설 재원조달계획 수립시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, 좋은도시아파트, 더스타일아파트 등 원인자부담금대상사업에 대해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음. 	<p>반 영 (보고서 6-74)</p> <p>반 영 (보고서10-21)</p>
<p>2. 소규모 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시 경제성평가 결과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내용과 상이하게 세대수 및 하수관로연장 등이 변경되어 개별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재분석될 경우에는 설치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성일반산업단지과 인접한 ‘취생’처리구역은 향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연계처리 여건 검토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. 	<p>☞ 소규모 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시 경제성평가 결과가 세대수 및 관거연장 변경으로 개별처리가 타당할 경우 설치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생소규모처리시설은 향후 설치사업시에 홍성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연계처리 검토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. 	<p>반 영 (보고서 6-127)</p>

승인조건	조치계획	비고
<p>- 140m³/일 증설을 계획한 ‘상촌’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물량의 대부분이 영업오수이며 그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상수사용량(지하수사용량)을 바탕으로 증설용량을 재산정하여야 함.</p>	<p>• 상촌리는 면소재지로 타 취락지구에 비해 영업오수량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소규모처리시설 오수발생원단위(200Lpcd)는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최근 상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였으며, 계획처리구역인 행산리는 영업시설이 없는 취락마을로 소규모 처리구역 오수발생원단위(200Lpcd)를 적용함.</p>	<p>반영 (보고서 6-125)</p>
<p>3. 홍성군의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「삼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('17년 수립예정)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함.</p>	<p>•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「삼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('17년 수립예정)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음.</p>	
<p>4. 「하수도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를 공고하여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되며, 그 내용은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.</p>	<p>• 신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사용개시 공고 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리구역을 확정토록 하겠음.</p>	